

# 언론 현장에서 바라본 잊혀질 권리



글 정재호  
국민일보 고충처리인

유럽사법재판소가 지난 5월 인정한 잊혀질 권리는 국내에서도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언론계는 잊혀질 권리가 기사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근거, 즉 기사삭제청구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서도 권리의 오·남용으로 인해 언론·출판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대법원이 2013년 3월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사삭제청구를 인정한 판례(2010다60950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보다 1년 2개월 앞서 나온 이 판례는 잊혀질 권리와 기사삭제청구에 대응해야 할 언론계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 판결은 헌법상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문제 된 사안이 아니라 인격권에 기초한 명예에 관한 것이다. 또 검색엔진운영자(구글)의 기사 검색 링크 삭제를 다룬 유

럽사법재판소 판결과는 달리, 언론사 사이트와 언론사가 제공한 포털의 기사삭제 문제를 직접 다뤘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뉴스 유통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 인격권에 기초한 기사삭제청구...고의·과실 없어도 위법한 보도에 인정

이 사건은 노컷뉴스가 원고의 미국 정보원 역할 의혹을 집중 제기하자 원고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웹사이트와 포털의 삭제를 요청한 것이 요지이다. 대법원은 “기사(49건)를 삭제하고 미디어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해당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고 판결한 1심과 원심을 인용하고 노컷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며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 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외에 현재 진행형의 침해행위 배제(기사삭제)와 장래의 침해행위 금지(보도 중지) 청구권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판례 평석(손원진, 안암법학 Vol.44, 2014)에 따르면 명예 조항인 민법 제751, 764조가 허위(虛僞)라는 위법성과 언론사의 고의·과실을 동시에 따진다면 이번 판결 취지는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위법성만 따지는 민법 제214조(소유물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서 기사삭제청구를 유추·적용한 것이다.

이처럼 고의나 과실로부터 자유로운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해 위 판결에서 기사삭제청구를 인정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삭제하지 않으면 온라인상에서 명예의 침해 상태가 무한정 지속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민법 제214조를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라 특히, 실용신안, 상표,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과 같이 기사삭제청구를 하나의 권리로 언론중재법 같은 특별법에 엄격하게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법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 3단계 삭제 심사 기준...진실 아닌 허위가 삭제의 핵심

기사삭제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은 “그 표현 내용이 ①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②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③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3단계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3단계 삭제 심사기준 가운데 1단계는 기사가 진실하지 않은 사적 사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기사의 주장이 진실인 경우와 사안이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 같은 공인에 의해 공적 이해(利害)를 야기한 경우는 기사삭제 요청을 배제하거나 엄격하고 제한적

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기서 문제는 사인이면서 단순히 공중의 관심의 대상인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CEO 같은 저명인사에 관한 기사의 삭제 여부이다. 진실에 부합하는 저명인사 관련 보도가 공중의 관심사항일 수는 있어도 반드시 공적 이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단계는 현재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원고의 명예에 대한 심사이다. 기사삭제는 기사가 공표된 이후에 요청되는 사후적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보도 시점과 삭제 요청 시점 사이에 명예 침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그 정도의 차이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사인은 물론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등 공인이나 연예인 같은 공적 인물에 관한 진실한 기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가령, 보도 당시 공인의 공적 이해나 범죄 행위에 관한 기사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사인으로 신분이 바뀌거나 공적 이슈와 더불어 부수적으로 보도됐던 일부 사적인 내용을 문제 삼아 현재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악용할 수 있다. 유명 연예인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의 연속 보도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재혼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 배우자 관련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는 일이 종종 있다. 청소년 시절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과거의 미담 기사가 현재는 사생활이나 명예를 위협한다며 삭제를 요청한다. 그런가 하면 과거의 유죄 판결 기사로 인해 결혼을 앞둔 자녀가 파경에 이를 지경이라고 호소한 사례도 있다.

이들 사례 모두 ‘과거의 진실한 기사’가 지금도 진실에 부합하지만 ‘현재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관적 이유로 기사의 전부 삭제를 요구하면서 언론과의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다.

3단계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비교·형량 심사이다. 언론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헌법 제21조 1항)가 있지만, 이 권리의 행사로 인해 명예가 침해된 자는 헌법 제21조 4항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명예를 비롯한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른 비교·형량에 의하더라도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기사삭제청구는 허위사실보도로 인해 현재 명예의 침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언론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언론·출판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쟁점은 언론사가 보도했을 시점에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지라도 보도 후에 허위로 증명된 경우이다. 이런 중간영역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언론사)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판단할 때에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우선시되는 판례의 경향과는 달리, 보도 후에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제기되는 기사삭제청구에서는 피해자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판례 평석은 기사삭제 요건으로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족하지 중대하고 현저한 명예의 침해나 공공성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만일 이를 고려한다면 허위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낮다거나 공공성과 관련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터넷상에 계속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공격 이해에 관한 사안인지와 현저하고 중대한 명예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장에서 언론사와 피해자 간 다툼의 여지도 있다.

설령 허위 사실에 대한 증명만으로 기사삭제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내용이 기사 전체 가운데 일부에 불과할 경우엔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언론중재법 상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권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긴 하다.

특히 종이신문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는 언론사가 고의나 과실의 책임을 지지 않고도 허위의 사실을 발견했을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기술적 장점을 갖고 있다. 기사 전체 가운데 일부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발견될 시 기사의 부분 삭제권을 도입해 볼 만한 이유다.

### 국내외 판례가 주는 시사점들...언론의 법적 지위 명확해야

언론의 입장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과 대법원의 '기사삭제' 판례에서 눈여겨볼 점은 언론사의 법적 지위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것인지와 기사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문제 될 경우 기사삭제청구의 문제로 접근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첫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언론사는 넓은 의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신문법상 법적 지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다. 민주적 여론 형성과 알 권리를 위해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스페인 정보보호 감독기관 AEPD 전경(출처 : gesprodat, 「Crónica de la Sexta Sesión Anual de la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2014년 3월 18일자)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스페인 정보보호 감독기관(AEPD)이 신문에 대한 기사삭제요청을 기각<sup>1)</sup>하고 구글과 달리 결정한 것은 우리 언론 관행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겠다.

둘째, 기사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문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 수 있는 기사는 전부 삭제가 아니라도 부분 수정·정정·삭제 등의 방법에 의해 식별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를 해소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상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격권은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 보호 영역 중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정정보도청구권에서 포섭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온라인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맺음말 – 잊혀질 권리 보장 대비 서둘러야

헌법상 인격권 등에 근거한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과 모바일이 보편화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언론보도의 피해로 인해 제기되는 기사삭제청구는 이러한 잊혀질 권리의 연장 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와 기사삭제청구에 관한 권리가 입법화된다고 해도 판례 취지로 보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면서까지 우월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잊

1) 2009년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즈는 자신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했을 때 빛 문제와 재산 강제 매각 내용이 담긴 1998년 '라 방가르디아(la Vanguardia)'의 기사가 검색되자 스페인 정보보호 감독기관(AEPD)에 해당 기사와 구글의 링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스페인 정보보호 감독기관은 구글의 링크에 대해서는 삭제를 결정하고 기사삭제요청은 기각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구글은 불복했고, 스페인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스페인 고등법원은 유럽 사법재판소에 다시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유럽사법재판소는 AEPD의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결하면서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가 인정된 최초 판결로 기록됐다.

혀질 권리가 성문화되면 언론사는 소송 폭탄에 휘말릴지도 모른다. 이로 인한 과도한 소송 비용과 업무 처리 부담은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에 위축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언론계와 언론사들이 서둘러서 잊혀질 권리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할 이유다.

다행히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이 종이신문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 기사가 무한정 확산되는 동시에 기사의 수정·삭제가 아주 쉽다는 점이다. 그만큼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상에 전송되는 국민일보의 모든 기사 하단에 취재원과 온라인 독자에게 접근권과 반론·정정·추후보도청구권이 있음을 고지(告知)하는 '뉴스 미란다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병기했다. 이를 통해 기사로 피해를 봤다는 독자들과 실시간으로 직접 소통하고 있다. 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제소당하기 전에 신속한 피해 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 / 전화:02-781-9711

모든 국민일보 기사 하단에 따라 붙는 국민일보의 '뉴스 미란다 원칙'

여기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와 고충처리인 같은 소송 전 피해의 구제 및 예방 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사 내에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고충처리인의 전문성 강화와 독립적인 업무 보장, 기술적 시스템 개발 및 보안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